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3일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눈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의료비 등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기에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력 교정 및 눈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3조 및 제4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,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~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시력 저하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의 시력 교정 및 눈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
 -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대하여
 -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의 기준에 대하여
 - 안 제6조에서는 시력검진, 교육, 안과 의료비 및 안경 구입비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저소득아동의 눈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·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시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아동기에 눈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학습능력 향상과 삶의 질 제고는 물론, 시각장애 예방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높은 정책이라 할 수 있음.
- 참고로 전국에 광주광역시 남구 1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
-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야외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근시 등 시각 이상 유병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, 아동 눈건강을 위한 조기검진, 교육, 지원사업 등이 시의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아동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으로 판단됨.

- 본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절차 등을 이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.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